

1. 제정이유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한 유해물질의 설치·사용기준, 유해물질목록의 작성·검인, 정기·임시검사, 선박재활용 준비검사·시설인증·계획승인, 항만국통제, 검사 등 대행협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세부 절차와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제2조)

이 규칙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

나. 유해물질의 관리(안 제3조~제11조)

유해물질의 설치·사용기준, 유해물질목록의 작성기준 및 검인 절차, 정기·임시검사의 방법,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의 유효기간 및 그 연장, 전자증서의 발급 및 신청서식을 규정

다. 선박재활용(안 제12조~제20조)

재활용 준비검사, 선박재활용시설 운영계획서의 작성, 시설 인증절차 및 인증심사, 인증서의 유효기간·갱신 및 인증 취소 등, 선박재활용 계획의 승인 신청, 재활용을 위한 준비 및 재활용의 시작·완료 통지를 규정

라. 감독(안 제21조~제23조)

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 및 확인, 항만국통제의 절차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규정

마. 보칙(안 제24조~제28조)

검사 등 대협협정 체결의 신청 및 협정기간의 연장, 수수료 및 항만국
통제 수수료, 선박재활용 실태 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검토 중

다. 합 의 : 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6. 9. 4. ~ 10. 16.)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기작업”이란 선박 내부에서 용접(熔接)·용단(溶斷)용 장비, 화염을 사용하는 가열장치 또는 그 밖에 불꽃을 발생시키는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 활동을 말한다.
2. “밀폐 공간”이란 출입구가 제한되어 있고, 환기가 불충분하며 작업자가 지속적으로 상주(常主)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공간으로서, 화물창, 화물펌프실, 공소 등을 말한다.
3. “물질신고서”란 선박의 제조·수리 또는 정비에 사용되는 자재 및 장비의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해물질 목록(이하 “유해물질목록”이라 한다)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해당 자재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함유 여부를 명시하고, 유해물질이 함유된 경우에는 그 명칭, 함유량 및 위치 등을 기록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4. "공급자 적합선언서"란 공급자가 제3호에 따른 물질신고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해당 물질신고서의 작성에 대한 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작성·서명한 문서를 말한다.

5. "선박재활용 공정(工程)"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선박재활용을 위하여 선박이 선박재활용시설에 도착한 시점부터 유해물질 제거, 선박 해체(解體), 폐기물 관리 등 일련의 작업을 단계별로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6. "진입안전"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안전조건을 말한다.

가. 대기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일 것

나. 가연성 증기 농도가 폭발하한계(LEL)의 1퍼센트 이하일 것

다. 대기 중 독성 물질의 농도가 노출기준(Occupational Exposure Limit)의 50퍼센트 미만일 것

라. 잔류물(殘留物)이나 물질 관련 분야의 자격을 소지하거나 선박재활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하 "권한 있는 사람"이라 한다)에 의해 독성물질이 방출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가연성 증기 농도가 작업 기간 동안 축적되지 않도록 관리될 것

7. "화기작업 안전"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안전한 상태를 말한다.

가. 제1호에 따른 화기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고, 인화성 또는 폭발성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나. 제6호에 따른 진입안전 조건을 충족할 것

다. 화기작업으로 인하여 공간 내의 대기 조건이 위험하게 변하지 않을 것
라. 인접한 모든 공간은 화재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잔류물(殘留物) 제거 등 청결하게 유지되고, 불활성화(不活性化)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제3조(선박의 유해물질 설치 및 사용기준)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제4조(유해물질목록의 작성기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란 별표 2와 같다.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목록을 선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하고, 그 언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 영어로 된 번역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유해물질목록의 검인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목록의 검인을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해물질목록 검인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해물질목록 2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검인 표시를 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유해물질목록에 영향을 미치는 선박시설 및 설비를

설치·교체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유해물질목록에 반영하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재검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검인받은 유해물질목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비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새로 작성한 유해물질목록 2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인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재검인의 신청 절차, 처리기간 및 검인 표시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정기검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기 위해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유해물질목록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인을 받은 유해물질목록 (이하 “검인받은 유해물질목록”이라 한다) 제1편
2. 별지 제4호서식의 물질신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공급자 적합선언서
3. 선내 유해물질의 위치 도면, 유해물질의 추정치 계산 자료 등 그 밖에 유해물질목록 개발에 사용된 문서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 (이하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라 한다)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유해물질목록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검인받은 유해물질목록 제1편이 변경된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서류

2.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④ 법 제9조에 따른 정기검사와 법 제13조에 따른 재활용 준비검사를 동시에 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만 발급한다.

제7조(임시검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유해물질목록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

2. 선박시설 및 설비의 변경·교체 또는 중대한 수리 사항이 반영된 유해물질목록 제1편

3. 별지 제4호서식의 물질신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공급자 적합선언서

② 법 제9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재활용 준비검사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해당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증서의 유효기간)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의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를 발급 받은 날
 2.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전까지 정기검사가 끝난 경우: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를 발급받은 날
 3.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이 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정기검사가 끝난 경우: 이전 정기 검사 후 발급받은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
 4.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정기검사가 완료된 경우: 종전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 다만, 선박이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선(繫船)한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끝난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정기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국제 유해물질관리증서를 발급받은 날로 한다.
 5.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은 경우: 연장되기 전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
-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 ④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의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준비검사를 받고 해당 증서를 발급받은 날로 한다.
- 제9조(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 받은 선박소유자는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 있는 경우: 3개월
2. 해당 선박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새로운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를 선박에 갖추어 둘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개월
3. 해당 선박이 출발항(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를 말한다)으로부터 최종 목적항까지의 거리 또는 출발항으로 회항하는 거리가 1,000해리 이내인 단거리 항해에 사용되는 경우 : 1개월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선박재활용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단일의 항해를 하려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운항 일정을 고려하여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 및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의 운항계획서 및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

4.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의 운항계획서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해당 증서에 각각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증서의 발급)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 및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신청서식)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목록의 검인,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준비검사,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 및 변경인증을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4항 및 제7항, 제1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대행기관의 자체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재활용 준비검사)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 준비검사(이하 “재활용 준비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활용 준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
2. 검인받은 유해물질목록 제1편, 제2편 및 제3편
3. 별지 제4호서식의 물질신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공급자 적합선언서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이하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라 한다) 사본 또는 해당 선박재활용시설이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인증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외국정부(국제협약의 당사국에 한정한다)가 발급한 서류의 사본
5.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선박재활용 계획 또는 외국정부(국제협약의 당사국에 한정한다)가 승인한 선박재활용 계획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활용 준비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활용 준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해서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선박재활용시설 운영계획서의 작성) ① 선박재활용업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선박재활용시설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세부작성 내용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재활용시설 운영계획서는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선박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선박재활용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신청서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박재활용시설 운영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선박재활용 관련 사업허가 관련 서류
3. 선박재활용시설의 소유나 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소유권·임차권 등 권리관계 서류, 하청계약서 등 시설의 운영 및 사용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
4. 선박재활용시설의 배치도
5. 폐기물의 수거, 처리 및 운반 등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계약서류
6. 업체의 조직체계도 등 시설 운영조직 및 인력 구성에 관한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영 제3조에 따른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에 합격한 선박재활용업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선박재활용업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

2. 선박재활용시설 운영 정보, 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보호 절차 등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 내용을 반영한 선박재활용시설 운영계획서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해당 선박재활용시설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인증심사에 합격한 선박재활용업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⑦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중간인증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중간인증심사시기 종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선박재활용시설 중간·갱신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

2. 시설 및 운영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

3. 선박재활용시설 활동 요약보고서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중간인증심사에 합격한 선박재활용업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선박재활용시설 중간인증심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인증심사)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 및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중간인증심사의 범위와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서면조사를 한 후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를 신청한 자에게 현장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를 신청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업무관계자와 면담

2. 현장조사에 필요한 안전조치와 예방조치

3. 그 밖에 현장조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④ 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의 세부 기준, 심사항목, 평가방법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 ①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시작하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최초로 인증심사를 받은 경우: 해당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를 발급 받은 날

2. 기존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존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前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③ 법 제15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선박재활용시설 중간·갱신인증 신청서에 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해당 선박재활용시설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에 합격한 선박재활용업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갱신되는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인증서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17조(인증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해당 선박재활용업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8조(선박재활용 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선박재활용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선박재활용업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선박재활용 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준비검사를 신청하기 30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6에 따라 작성한 선박재활용계획서
2. 해당 선박의 소유권 또는 처분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선박재활용계약서 사본
4.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 사본 및 선박재활용시설 운영계획서
5. 그 밖에 선박재활용 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선박재활용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선박재활용 계획 승인신청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선박재활용 계획 승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재활용업자 또는 선박재활용시설(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재활용 선박 정보(선명, 선박번호 및 소유자를 포함한다)
3. 유해물질의 제거, 관리, 처리절차, 작업계획 및 조치사항
4. 진입안전 및 화기작업 안전관리 절차
5. 선박재활용 공정

③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선박 재활용 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재활용 계획

승인서를 발급하고 3일 이내에 선박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선박재활용 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승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승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9조(선박재활용을 위한 준비) 법 제1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선박이 선박재활용시설에 들어가기 전 선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화물, 연료유, 폐기물 등의 수량 최소화
2. 유조선의 경우 선박재활용시설에 도착하기 전 화물탱크와 펌프실 등의 진입안전 및 화기작업 안전 확보
3.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의 보유

제20조(선박재활용의 시작 및 완료 통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박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재활용 시작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의 선박재활용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사본
2. 선박재활용 계획 사본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선박을 인수하려는 선박재활용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선박재활용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인받은 유해물질목록 제1편, 제2편 및 제3편

2. 승인받기 위한 선박재활용 계획서 사본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선박재활용 시작 계획을 통지하려는 선박재활용업자는 선박재활용 시작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재활용 시작 계획보고서에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선박재활용 계획에 따른 선박의 재활용이 완료된 경우에는 선박재활용 완료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선박재활용 완료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박재활용 완료보고서를 접수한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완료보고서 사본을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를 발행한 외국정부(국제협약의 당사국에 한정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 및 확인) ①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재활용업자는 그 개선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보고서에 명령 이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소유자인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선박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2. 선박재활용업자인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선박재활용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②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개선명령서의 개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항만국통제)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박에 유효한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 또는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2. 선박에 유효한 유해물질목록을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 선박시설 및 설비의 상태가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 및 유해물질목록 제1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유해물질목록 제1편의 유지·관리를 위한 이행절차를 수립하지 않은 경우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선박 정밀점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 서식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을 준용한다.

제23조(이의신청)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박안전법」 제68조를 준용한다.

제24조(협정 체결의 신청)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임원의 성명

3. 선박검사원의 수

4. 정관 및 예산

5. 등록된 선박의 수 및 검사기준

6. 수수료의 기준

7. 검사 등 업무의 대행계획서

8.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5조(협정기간의 연장)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협정기간을 연장하려는

대행기관은 협정기간의 종료일 90일 전까지 제24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협정체결 당시와 달라진 내용이 없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수수료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야하는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대행기관이 법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항만국통제 수수료)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항만국통제의

결과로 결함의 시정명령 등을 확인하는 등에 필요한 수수료와 그 징수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80조에 따른 수수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선박안전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결함의 시정 여부 확인 등으로 인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제28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 발급 실적
2.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 발급 실적
3. 선박재활용 관련 사건 또는 사고 현황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인공위성, 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나 문헌·자료 등을 통한 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협약 발효 전 건조 선박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선박의 경우, 제6조제1항제2호의 서류를 별지 제23호 서식의 육안·표본 검사 계획 및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유해물질의 설치 및 사용기준(제3조 관련)

1. 선박에 설치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유해물질은 다음의 사용기준을 따라야 한다.

번호	물질		사용기준
1	석면		모든 선박에 석면을 포함하는 설비의 신규 설치 금지
2	폴리염화비페닐(PCB)		모든 선박에 폴리염화비페닐을 포함하는 설비의 신규 설치 금지
3	오존층 파괴 물질	CFC	모든 선박에 오존층 파괴물질을 포함하는 설비의 신규설치 금지
		Halons	
		기타 완전 할로겐화 CFC	
		사염화탄소	
		1,1,1-트리클로로에탄(메틸 클로로포름)	
		하이드로클로로플루오르카본	
		하이드로브로모플루오르카본	
		메틸 브로마이드 브로모클로로메탄	
4	유해방오시스템	유기주석 화합물을 살생물제로 함유한 방오 시스템	1. 모든 선박에 유기주석 화합물을 살생물제로 함유한 방오시스템이나 국제해사기구가 유해방오도로로 정한 도료 또는 이를 사용한 설비의 사용 금지
		시부트린 함유 방오 시스템	2. 선박에 방오시스템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40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을 따를 것

2. 선박의 구조물 및 장비에 포함된 유해물질은 유해물질목록 제1편에 기재하여 선박의 모든 운항 기간 동안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3. 운항 중 발생한 유해물질 및 폐기물은 유해물질목록 제2편 및 제3편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선박재활용시설에 들어가기 전 수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유해물질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들은 유해물질목록 제3편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비고: 유해물질의 허용치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유해물질 목록 개발을 위한 지침(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ventory of Hazardous Materials)」을 따른다.

유해물질목록의 작성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유해물질목록의 구성

유해물질목록은 다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제1편 :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유해물질이 포함된 선박의 구조물 또는 장비

나. 제2편 : 운항 중 발생하는 [별표 1] 제3호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

다. 제3편 : 운항 중 발생하는 [별표 1] 제3호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 그리고 유해물질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별표 1] 제4호의 물품

2. 유해물질목록 제1편의 작성

가. 일반사항

- 1) 유해물질목록 제1편은 설계 및 건조 단계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 2) [별표 1] 제1호에 나열된 유해물질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유해물질의 양과 위치를 제1편에 기재하여야 한다. 유해물질이 국제협약에 따라 사용이 허용된 경우에도 제1편에 해당 물질을 기재하여야 한다.
- 3) [별표 1] 제2호에 나열된 유해물질이 선박의 구조물 및 장비 등에 허용치 이상으로 존재하는 경우, 해당 구조물 및 장비 등의 수량·위치 및 함량을 제1편에 기재하여야 한다.
- 4)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나열된 유해물질이 포함된 모든 예비 부품은 제3편에 기재하여야 한다.
- 5) 유해물질의 확인은 공급자가 제공한 물질신고서 및 공급자 적합확인서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나. 경과조치 적용 선박(해당하는 경우)

- 1)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선박의 유해물질목록 제1편은 가목의 절차가 아닌 다음의 단계별 절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가) 필요한 정보의 수집

나) 수집된 정보에 대한 평가

다) 육안·표본 검사 계획 수립

라) 선상 육안·표본 검사

마) 관련 문서 준비 및 목록 작성

- 2) 필요한 정보의 수집을 위해 선박소유자는 선박과 관련된 이용 가능한 모든 문서를 식별·조사·요청 및 확보하여야 한다.

- 3)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별표 1] 제1호에 나열된 모든 유해물질의 존재 가능

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별표 1] 제2호에 나열된 물질은 가능한 한 존재 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4) 제3호의 평가 결과는 육안·표본 검사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 5) 별표 1 제1호에 나열된 모든 유해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수집된 정보와 전문 지식을 고려하여 육안·표본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6) 육안·표본 검사 지점은 별표 1 제1호에 나열된 유해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곳, 구체적인 문서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곳 및 불확실한 성분의 물질이 사용된 곳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7) 선상 육안·표본 검사는 육안·표본 검사 계획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행하여야 하며, 표본 검사를 수행할 때는 표본의 채취 지점을 도면에 명확히 표시하고 표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 8) 같은 종류의 물질은 대표성을 갖는 방식으로 채취될 수 있으며, 같은 종류의 물질임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되어야 한다.
- 9) 유해물질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선상 육안·표본 검사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검사 지점은 선박도면에 기록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 10) 선박의 구조물 및 장비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조물 및 장비는 개조·수리 등의 작업 시 선박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육안·표본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11) 선박의 구조물 및 장비가 유해물질 함유 또는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분류된 경우, 추정량과 위치를 제1편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류는 비고란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 12) 최초 목록 작성 후 개조 또는 수리 등으로 인한 신규 설치 및 변경에 대해서는 가목의 절차를 따른다.

3. 유해물질목록 제2편의 작성

- 가.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선박재활용시설에 인도하기 전까지 유해물질목록 제2편을 작성하여야 한다.
- 나. 유해물질목록 제2편을 작성할 때는 선박의 화물 잔류물, 연료유 및 폐기물의 잔량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선박이 선박재활용시설로 운항하는 동안 발생하는 폐기물의 추정량과 위치는 유해물질목록 제2편에 기재하여야 한다.

4. 유해물질목록 제3편의 작성

- 가.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선박재활용시설에 인도하기 전까지 유해물질목록 제3편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유해물질목록 제3편을 작성할 때는 선박에 적재된 물품의 잔량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유해물질목록 제3편에 기재된 각 항목은 선박의 최종 운항상태와 같아야 한다.

5. 유해물질목록의 적합성 확인 및 관리

가. 설계 및 건조단계

유해물질목록 제1편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질신고서 및 공급자 적합확인서를 참조한다.

나. 운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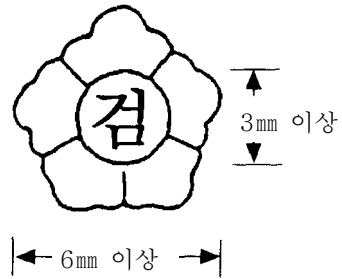
선박소유자는 유해물질목록 제1편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1) 유해물질목록의 유지·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담당자는 육상 또는 선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 2) 담당자는 기재사항에 영향을 주는 신규설치 및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유해물질목록에 반영하기 위한 유해물질목록 유지·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규추가·삭제 일자 및 담당자 서명 등 기록하여야 한다.
- 3) 담당자는 선박의 검사 또는 매각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비고 : 위 기준에 따른 유해물질목록 작성에 관한 세부 기준 및 그 밖의 사항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유해물질목록 개발을 위한 지침(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ventory of hazardous materials)」을 따른다.

■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유해물질목록의 검인 표시(제5조제2항 관련)



비고: 위의 표시 외에 검인기관의 약호(略號) 및 검인일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선박재활용시설 운영계획서의 작성 방법(제13조제1항 관련)

선박재활용시설 운영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서의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면, 배치도, 조직도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의 사본을 운영계획서의 부록으로 첨부할 수 있다.

1. 선박재활용시설의 관리정보

- 가. 선박재활용업자 정보
- 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다. 작업자 관리 체계
- 라. 기록 관리 체계

2. 선박재활용시설의 운영정보

- 가. 선박재활용시설 주요 정보
- 나. 재활용할 선박의 수용 가능성
- 다. 선박재활용 계획의 개발
- 라. 선박 도착 관리 체계
- 마. 선박재활용 방법 수립
- 바. 완료 후 보고 절차

3. 작업자의 안전 및 보건 규정 준수 절차

- 가. 작업자의 건강 및 안전
- 나. 주요 안전 및 보건 인력
- 다. 직무 위험 평가
- 라. 인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방지
 - 1) 진입안전 절차
 - 2) 화기작업안전 절차
 - 3) 용접(鎔接), 절단(切斷), 분쇄(粉碎) 및 가열(加熱)
 - 4) 드럼, 용기 및 압력용기
 - 5) 낙상 방지 및 낙하물에 의한 사고
 - 6)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 및 자재 취급을 위한 기기 및 장비
 - 7) 집기 및 조명
 - 8) 도구 및 장비의 유지 및 오염 제거
 - 9) 보건 및 위생

- 10) 개인보호장비
- 11) 작업자 노출 및 의료 모니터링
- 마. 비상 대비 및 대응 계획 수립
- 바. 화재 및 폭발 방지, 탐지 및 대응 체계
- 4. 환경보호 준수 절차
 - 가. 환경 모니터링 체계
 - 나. 유해물질 관리 체계
 - 1) 잠재적 유해물질 포함 가능성
 - 2) 추가 샘플링 및 분석
 - 3) 식별, 표지 및 라벨링, 그리고 선상의 잠재적인 선내 설치 위치
 - 4) 제거, 취급 및 정화
 - 5) 유해물질 제거 후 저장 및 라벨링
 - 6) 처리, 운송 및 폐기
 - 다. 유해물질의 환경친화적인 관리 체계
 - 1) 석면 및 석면 함유 물질
 - 2) 폴리염화비페닐(PCB) 및 폴리염화비페닐(PCB) 함유 물질
 - 3) 오존층파괴물질(ODS)
 - 4) 페인트 및 코팅
 - 5) 위험 액체, 잔류물 및 침전물(기름, 발지 및 선박평형수 등)
 - 6) 중금속(납, 수은, 카드뮴 및 6가 크롬 등)
 - 7) 기타 위험 물질
 - 라. 환경에 대한 악영향 방지
 - 1) 유출 예방, 통제 및 대응
 - 2) 우수(빗물) 오염 방지
 - 3) 잔해물 방지 및 관리
 - 4) 사고 및 유출 보고 절차

비고: 위 기준에 따른 선박재활용시설 운영계획서의 작성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 및 그 밖의 사항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 지침(Guidelines for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ship recycling)」을 따른다.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심사 범위 및 방법(제15조제2항 관련)

1. 서면조사

인증심사를 수행하는 심사관은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바탕으로 적정성 평가 및 확인 등 서면조사를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 가. 선박재활용시설 운영계획서
- 나. 선박재활용시설의 유해물질 관리절차서
- 다. 시설 부지 사용에 관한 서류
- 라. 필요시 해당 시설의 환경영향조사 결과

2. 현장조사

제2호에 따른 서면조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시설에 한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한다.

- 가. 선박재활용시설 운영계획서 작성과 이행여부 확인
- 나. 경영진, 권한 있는 사람 및 작업자의 업무·역할·책임에 따른 업무 지식 등 확인을 위한 면담
- 다. 하청업체가 있는 경우 동일한 평가 및 검증의 실시
- 라. 비상 대비 및 대응과 관련된 절차, 사고보고 체계 및 현장훈련을 통한 확인

3. 심사 유형별 범위 및 심사방법

가. 최초인증심사

- 1) 선박재활용시설의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 체계의 최초 수립·시행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실시한다.
- 2) 제1호에 따른 서면조사 완료 후, 제2호에 따른 현장조사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체계의 구축 상태를 심사한다.

나. 중간인증심사

- 1) 최초인증심사와 갱신인증심사 사이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시설관리체계가 적정하게 시행·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 2) 선박재활용시설의 활동 요약 보고서, 경영진, 권한 있는 사람 및 작업자의 업무·역할·책임의 이행확인을 위한 면담, 현장심사 등 안전보건·환경 절차의 부합성을 종합하여 심사한다.

다. 갱신인증심사

- 1)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실시하며, 최초인증심사에 준하여 실시한다.

- 2) 최신의 선박재활용시설 운영계획서를 포함한 관리체계 일체와 종전 인증기간 동안의 이행 실적을 종합하여 심사한다.

라. 변경인증심사

- 1) 선박재활용시설의 범위, 운영 방식 또는 유해물질 관리체계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등 인증 사항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 실시한다.
- 2) 변경된 내용 및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변경 사항이 기존 안전관리·환경보호 체계에 부합하는지 그 적정성을 심사한다.

4. 인증서 발급 및 변경

최초인증심사, 중간인증심사 및 변경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기준을 충족하거나 인증 사항의 변경이 확인된 경우 인증서를 발급, 갱신 또는 재발급할 수 있다.

비고: 위 기준에 따른 인증심사의 세부 기준 및 그 밖의 사항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을 위한 지침(Guidelines for the authorization of ship recycling facilities)」을 따른다.

선박재활용계획서의 작성 방법(제18조제1항제1호 관련)

선박재활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한글과 영문 병기하여 작성한다.

1. 재활용 대상 선박 및 선박재활용업자 일반사항

- 가. 재활용 대상 선박 일반정보 : 선명, 선종, 총톤수, 기국 등 선박정보 및 소유자를 포함한 선박에 대한 권리관계 명세
- 나. 선박재활용업자 일반정보 :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및 선박재활용 시설 인증 사업장 해당 여부, 하청업체(재활용업체 등) 현황

2. 선박재활용 계획의 개요

- 가. 선박재활용 작업일정 : 재활용 대상 선박의 재활용시설 도착일, 재활용 시작일 및 완료일, 구성품 판매·처분 완료일, 폐기물 최종 처리 완료일 등 예상 일정
- 나. 선박재활용시설 현황 : 상가대의 위치, 길이, 허용하중 등 작업공정과 관련된 시설정보, 안전·환경과 관련된 소방시설, 방제창고 등 시설물의 사업장 내 위치와 규모가 파악될 수 있는 전체 배치도
- 다. 시설 주변 환경정보 : 사업장 인근 지역 주요 시설물의 위치도·명세, 주변 민감자원(어장·양식장, 취·배수구 등) 현황
- 라. 작업자 안전·보건사항 : 작업자의 안전 및 보건규정 준수 절차, 교육·훈련 사항

3. 선박재활용 계획의 세부내용

가. 재활용 대상 선박 도착 전 준비사항

- 1) 선박이 배치될 상가대 등 시설물의 구체적 위치·규모 및 안전한 배치 계획
- 2) 선박소유자 계약범위 내에서의 선박재활용 시설능력(설비·장비, 기술 등) 적합성 검토 사항
- 3) 재활용시설 도착 전 시설 외부에서 시행 될 유해물질 최소화 작업 범위 및 유해물질 별 보관·처리 계획
- 4) 유조선의 경우, 화물탱크 및 펌프룸 등 진입안전 및 화기작업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나. 선박 도착 시 조치사항

- 1) 잠재적 환경·안전 문제 식별을 위한 선박 내부 점검계획

- 2) 작업자가 안전하게 재활용 대상 선박을 출입할 수 있는 출입로 위치, 승하선 수단 등의 정보
- 3) 화물구역, 밀폐구역 등 위험구역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한 조명, 위험표지판, 반사스티커 등 조치 수단 및 방법
- 4) 유해물질목록에 기재된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설비·기기 표시사항
- 5) 유해 특성 불확실항목(장비·구역)에 대한 별도 표시 및 필요시 추가 샘플링 계획

다. 유해물질의 제거, 관리, 처리절차, 작업계획 및 조치사항

- 1) 유해물질에 대한 유해물질목록과의 동일한 명칭 및 식별체계 사용
- 2) 유해물질 별 정보(종류, 수량, 위치 등)에 따른 물질의 제거·관리·처리절차 및 전문 인력·장비 동원 등 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
- 3) 선박 특수성에 따라 일반화된 방법과 다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의 조치사항
- 4) 선박재활용 시설 내 임시보관장소 지정 및 최종 처리를 위한 업체정보와 처리절차 및 방법
- 5) 선박재활용 시설 내에서 유해물질 제거작업을 수행할 수 없어 별도의 시설에서 수행되는 경우 해당 시설정보 및 작업계획

라. 진입안전 및 화기작업 안전관리 절차

- 1) 선박 별 위험구역(질식이 우려되는 구역 또는 폭발가능성이 높은 구역)의 위치, 구조 및 과거 화물 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절차
- 2) 선박 위험구역 진입과 화기작업 시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보호구 및 가스탐지기 등의 장비 목록 및 사용방법
- 3) 선박 재활용 작업 기간 중 진입안전 및 화기작업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및 모니터링 체계

마. 사고 대비·대응 계획

- 1) 해양오염, 화재·폭발 및 인명사고를 대비한 비상대응계획 및 장비·자재의 배치 계획
- 2) 비상연락망과 비상대응조직도 등 비상대응체계 구성·운영계획
(사고 발생 시 사고 대응 담당자, 공동 대응을 위해 연락 가능한 인근 사업장, 유관기관의 목록 및 신고·연락 체계 등을 포함)

바. 선박 재활용 공정

- 1) 선박의 재활용시설 도착부터 재활용 작업 완료 시까지 재활용 작업 순서
- 2) 선박 및 유해물질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시설 내 배치, 유해물질 제거, 선박

해체, 폐기물 관리 등 작업공정 구분 및 각 공정별 구체적인 작업계획
(작업방식, 인력정보, 동원장비 및 설비 등을 포함한다.)

- 3) 선령, 유해물질 수량·상태 등으로 인한 모든 유해물질의 제거 한계에 따른
작업계획

사. 기타 필요 요소

- 1) 기존 선박재활용시설 운영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특정 선박 재활용을 위한 추가
조치사항 및 작업계획
- 2) 특정 선박 또는 유해물질의 특수성을 처리하기 위한 인력, 협력업체 및 장비
추가 활용 계획

비고: 위 기준에 따른 선박재활용 계획의 작성 방법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재활용 계획 개발 지침(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ship recycling plan)」을 따른다.

수수료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목록의 검인 또는 재검인을 신청하는 자: 3천원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유해물질관리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1,500원
3. 법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자

선박 규모	정기검사	임시검사	재활용 준비검사	비고
500톤 이상 1천톤 미만	7만2천원	1만원	12만3천원	
1천톤 이상 2천톤 미만	9만1천원	1만1천원	15만4천원	
2천톤 이상 5천톤 미만	10만5천원	1만3천원	17만8천원	
5천톤 이상 1만톤 미만	11만8천원	1만4천원	20만원	
1만톤 이상	18만2천원	1만5천원	30만9천원	

※ 비고

- 1) 선박검사관 한 명이 4시간 이내의 시간 동안 검사하는 경우를 1회 검사로 하여 해당 수수료를 내고, 검사 기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검사 횟수마다 해당 수수료의 20퍼센트씩 더하여 내야 한다.
 - 2) 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 1,500원
 5.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 1,500원

6.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박재활용 시설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수용가능한 선박의 최대 규모	최초/갱신	중간	변경	비고
5천톤 미만	25만원	12만5천원	7만5천원	
5천톤 이상 1만톤 미만	50만원	25만원	15만원	
1만톤 이상 5만톤 미만	75만원	37만5천원	22만5천원	
5만톤 이상 10만톤 미만	150만원	75만원	45만원	
10만톤 이상	170만원	85만원	51만원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박재활용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 3천원

■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유해물질목록 검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5일
------	------	----------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전자우편	

선박	선명	국제해사기구(IMO) 번호
	총톤수	선박의 종류
	건조계약일	인도일
	용골거치일(건조계약일이 없는 경우)	

비고 (재검인 사유 등)	
---------------------	--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목록 제1편[], 제2편[], 제3편[]의 검인[], 재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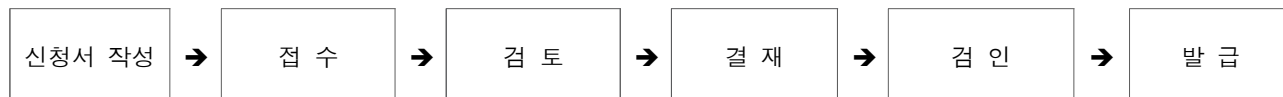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선급법인의 장

첨부서류	검인받으려는 유해물질목록 2부	수수료 3천원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대행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유해물질목록 제_편

(Inventory of Hazardous Materials Part _)

선명 Name of ship	
총톤수 Gross Tonnage(ITC)	
국제해사기구(IMO) 번호 IMO number	

제1편 유해물질이 포함된 선박의 구조물 또는 장비 (Part 1 HAZARDOUS MATERIALS CONTAINED IN THE SHIP'S STRUCTURE AND EQUIPMENT)

1.1 국제해사기구(IMO) 지침 부록 1의 표 A 및 표 B에 나열된 물질이 함유된 방오시스템

1.1 Paints and Coating Systems containing materials listed in Table A and Table B of Appendix 1 of the Guidelines

번호 No.	방오시스템의 적용 Application of Paint	방오시스템의 명칭 Name of Paint	위치 Location	물질 (부록 1에서의 분류) Materials (Classification in Appendix 1)	추정량 Approximate Quantity	비고 Remarks
1					kg	
2					m ³	
3						
4						
5						

1.2 국제해사기구(IMO) 지침 부록 1의 표 A 및 표 B에 나열된 물질이 함유된 장비 및 기계

1.2 Equipment and Machinery containing materials listed in Table A and Table B of Appendix 1 of the Guidelines

번호 No.	장비 및 기계의 명칭 Name of Equipment and Machinery	위치 Location	물질 (부록 1에서의 분류) Materials (Classification in Appendix 1)	사용된 부 품 Parts of Use	추정량 Approximate Quantity	비고 Remarks
1					kg	
2					m ³	
3						
4						
5						

(제3쪽)

1.3 국제해사기구(IMO) 지침 부록 1의 표 A 및 표 B에 나열된 물질이 함유된 구조물 및 선체

1.3 Structure and Hull containing materials listed in Table A and Table B of Appendix 1 of the Guidelines

번호 No.	구조 요소의 명칭 Name of Structural Element	위치 Location	물질 (부록 1에서의 분류) Materials (Classification in Appendix 1)	적용된 부위 Parts of Use	추정량 Approximate Quantity	비고 Remarks
1					kg	
2					m ³	
3						
4						
5						
6						

(제4쪽)

제2편 운항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 및 폐기물 **(Part 2 OPERATIONALLY GENERATED WASTE)**

번호 No	위치 ¹⁾ Location ¹⁾	물질명(부록 1에서의 분류) 및 물질의 세부정보(있는 경우) Name of Item (Classification in Appendix 1) and Detail (if any) of the Item	추정량 Approximate Quantity		비고 Remarks
1				kg	
2				m ³	
3					
4					
5					
6					
7					
8					
9					
10					

1) 제2편 또는 제3편 항목의 위치는 하부에서 상부로, 선수부에서 선미부로의 순서에 따라 해당 위치를 기준으로 기입되어야 한다. 또한 제1편 항목의 위치도 가능한 한 동일한 방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권장된다.

1) The location of a part II or part III item should be entered in order based on its location, from a lower level to an upper level and from a fore part to an aft part. The location of part I items is recommended to be described similarly, as far as practicable.

(제5쪽)

제3편 운항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 및 폐기물 그리고 유해물질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 (Part 3 STORES)

3.1 물품들 3.1 Stores

번호 No.	위치 ¹⁾ Location ¹⁾	물질명 (부록 1에서의 분류) Name of Item (Classification in Appendix)	단위 Unit	수량 Quantity	수량 Figure	추정량 Approximate Quantity	비고 ²⁾ Remarks ²⁾
1				kg	bottles	kg	
2				m ³	pcs	m ³	
3							
4							

3.2 선박의 기계 및 장비에 밀봉된 액체 3.2 Liquids sealed in ship's machinery and equipment

번호 No.	액체의 종류 (부록 1에서의 분류) Type of Liquids (Classification in Appendix 1)	기계 또는 장비의 명칭 Name of machinery or equipment	위치 Location	추정량 Approximate Quantity	비고 Remarks
1				kg	
2				m ³	
3					
4					

1) 제2편 또는 제3편 항목의 위치는 하부에서 상부로, 전수부에서 선미부로의 순서에 따라 해당 위치를 기준으로 기입되어야 한다. 또한 제1편 항목의 위치도 가능한 한 동일한 방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권장된다.

1) About Location of Part II and Part III, each items should be entered in order based its location from a lower level to an upper level and from a fore part to an aft part for respective subparts. The Location of Part I is recommended to be described similarly as much as practicably possible.

2) 제3편 항목의 “비고” 란에는 제품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구성물의 대략적인 양을 가능한 한 표시하여야 한다.

2) About Remarks of Part III, if Hazardous Materials are integrated in products, the appx. amount of the contents should be shown as much as possible.

(제6쪽)

3.3 선박의 기계 및 장비에 밀봉된 가스

3.3 Gases sealed in ship's machinery and equipment

번호 No.	가스의 종류 (부록 1에서의 분류) Type of Gases (Classification in Appendix 1)	기계 또는 장비의 명칭 Name of machinery or equipment	위치 Location	추정량 Approximate Quantity		비고 Remarks
1					kg	
2					m ³	
3						
4						
5						

3.4 유해물질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일반 소모품

3.4 Regular consumable goods

번호 No.	위치 ¹⁷⁾ Location ¹⁷⁾	물 품명 Name of Item	수량 Quantity	비고 Remarks
1				
2				
3				
4				
5				

17) 제2편 또는 제3편 항목의 위치는 하부에서 상부로, 선수부에서 선미부로의 순서에 따라 해당 위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제1편 항목의 위치도 가능한 한 동일한 방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권장된다.

17) The location of a part II or part III item should be entered in order based on its location, from a lower level to an upper level and from a fore part to an aft part. The location of part I items is recommended to be described similarly, as far as practicable

국제유해물질목록 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수검요청일부터 14일 이내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전자우편	
설치선박	선명	국제해사기구(IMO) 번호
	총톤수	국적(선적항)
	수검요청일	수검장소
비고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 임시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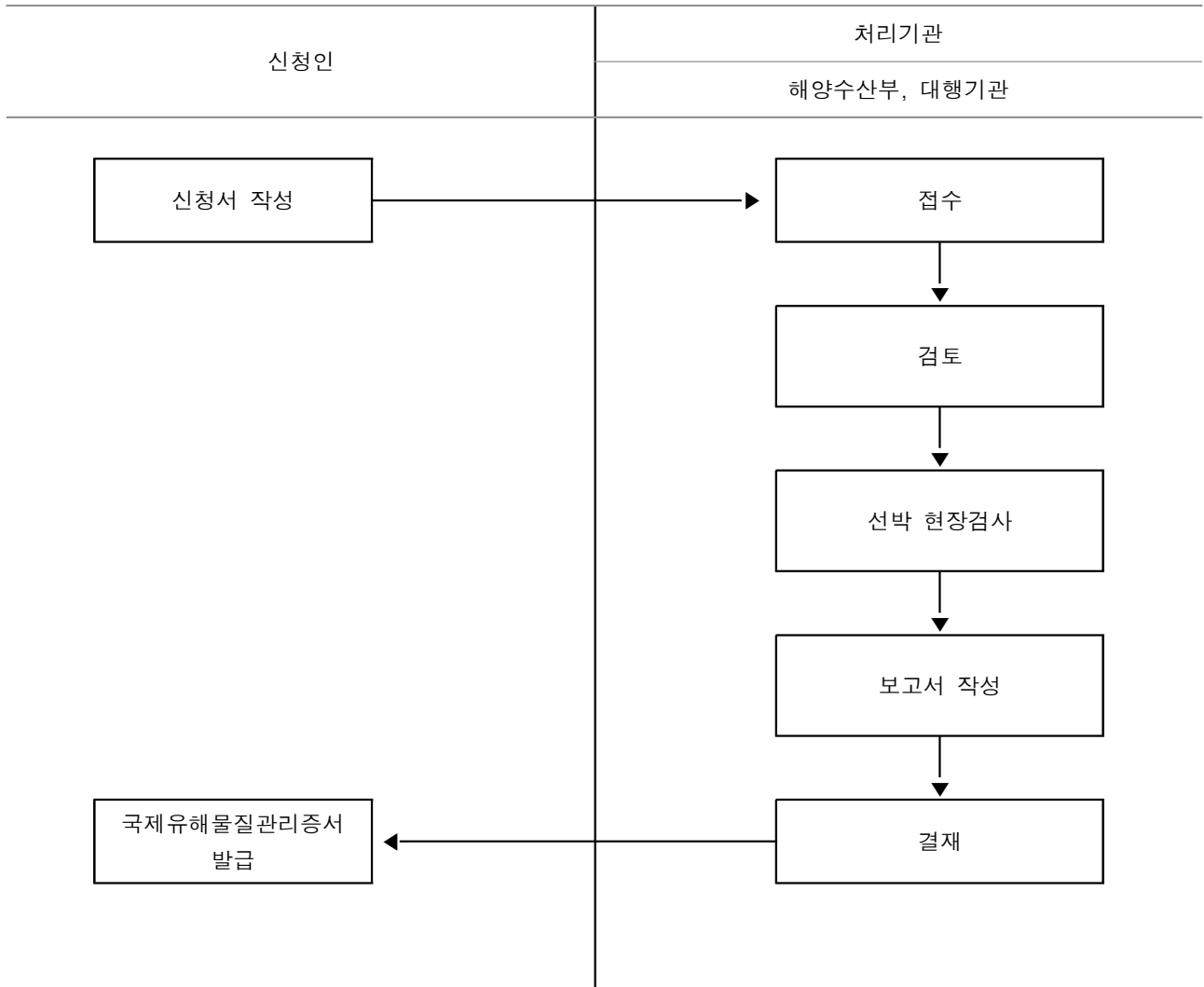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선급법인의 장

첨부서류	정기검사	1.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인을 받은 유해물질목록 제1편 2. 별지 제4호서식의 물질신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공급자 적합선언서 3. 육안·표본 검사 계획 및 보고서 (해당되는 경우) 4. 선내 유해물질의 위치 도면, 유해물질의 추정치 계산 자료 등 그 밖에 유해물질 목록 개발에 사용된 문서 5.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외)	수수료 별표 7에 따름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시검사	1.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 2. 선박시설 및 설비의 변경·교체 또는 중대한 수리 사항이 반영된 유해물질목록 제1편 3. 별지 제4호서식의 물질신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공급자 적합선언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물질신고서][FORM OF MATERIAL DECLARATION]

<신고 날짜>

<Date of declaration>

날짜 Date	
------------	--

<물질신고서 식별 번호>

<MD ID number>

물질신고서 식별번호 MD-ID No.	
----------------------------	--

<Other information>

<기타 정보>

비고 1 Remark 1	
비고 2 Remark 2	
비고 3 Remark 3	

<공급자(응답자) 정보>

<Supplier (respondent) information>

회사명 Company name	
부서명 Division name	
주소 Address	
연락담당자 Contact person	
전화번호 Telephone number	
팩스번호 Fax number	
이메일주소 Email address	
공급자 적합선언서 식별 번호. SDoC ID no.	

<제품 정보>

<Product information>

제품명 Product name	제품 번호 Product number	납품 단위 Delivered unit		제품 정보 Product information
		양 Amount	단위 Unit	

표 Table	물질명 Material name		허용치 Threshold Value	허용치 이상 존재 여부 Present above threshold value	"예"의 경우 물질 질량 If yes, material mass		"예"의 경우 사용 위치에 대한 정보 If yes, information on where it is used
				예 / 아니요 YES / NO	질량 Mass	단위 Unit	
표 A Table A (국제협약 부록 1에 나열된 물질) (materials listed in appendix 1 of the Convention)	유기주석 화합물을 살생물제로 함유한 방오 시스템 Anti-fouling systems containing organotin compounds as a biocide		2,500 mg total tin/kg				
	시부트린 함유 방오 시스템 Anti-fouling systems containing cybutryne		1,000 mg/kg ²⁾				
표 B Table B (국제협약 부록 2에 나열된 물질) (materials listed in appendix 2 of the Convention)	카드뮴 및 카드뮴 화합물 Cadmium and cadmium compounds		100 mg/kg				
	6가 크롬 및 6가 크롬 화합물 Hexavalent chromium and hexavalent chromium compounds		1,000 mg/kg				
	납 및 납 화합물 Lead and lead compounds		1,000 mg/kg				
	수은 및 수은 화합물 Mercury and mercury compounds		1,000 mg/kg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Polybrominated biphenyl(PBBs)		50 mg/kg				
	폴리브롬화 데페닐 에테르(PBDE) Polybrominated dephenyl ethers(PBDEs)		1,000 mg/kg				
	폴리클로로나프탈렌(CI ≥ 3) Polychloronaphthalenes(CI ≥ 3)		50 mg/kg				
	방사성 물질 Radioactive substance		허용치 없음 no threshold value				
	특정 단쇄 염소화 파라핀 Certain 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1%				

<물질정보>

<Materials information>

아래의 물질 정보는 품명(단위: 개, kg, m, m2, m3 등) 의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양을 보여줌

This materials information shows the amount of hazardous materials contained in

1	Unit
---	------

 (unit: piece, kg, m, m2, m3, etc.) of the product.

표 Table	물질명 Material name		허용치 Threshold Value	허용치 이상 존재 여부 Present above threshold value	"예"의 경우 물질 질량 If yes, material mass		"예"의 경우 사용 위치에 대한 정보 If yes, information on where it is used
				예 / 아니요 YES / NO	질량 Mass	단위 Unit	
표 A TableA (국제협약 부록 1에 나열된 물질) (materials listed in appendix 1 of the Convention)	석면 Asbestos		0.1% ¹⁾				
	폴리염화비페닐(PCB) Polychlorinated biphenyls(PCBs)		50 mg/kg				
	오존층 파괴 물질 Ozone-depleting substance	클로로플루오로카본 Chlorofluorocarbons	허용치 없음 no threshold value				
		할론 Halons					
		기타 완전 할로겐화 Other fully halogenated CFCs					
		사염화탄소 Carbon tetrachloride					
		1,1,1-트리클로로에탄 1,1,1-Trichloroethane					
		하이드로클로로 플루오로카본 Hydrochlorofluorocarbons					
		하이드로브로모 플루오로카본 Hydrobromofluorocarbons					
		메틸 브로마이드 Methyl bromide					
		브로모클로로메탄 Bromochloromethane					

-
- 1) 국제협약 제4조에 따라 모든 선박에 대하여 석면을 함유한 물질의 신규 설치는 금지된다.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전문가 소위원회(UNSCGHS)」가 채택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의 권고에 따르면, 2002년 전문가 소위원회에서 채택되어 2003년에 공표된 GHS에서는 발암성 혼합물(석면 함유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제1A군(Category 1A)으로 분류되는 경우 그 함유율이 0.1퍼센트를 초과하면 발암성 물질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퍼센트의 기준값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값을 유해물질목록(Inventory of Hazardous Materials) 및 가능한 경우 물질신고서(Material Declaration)에 기재하여야 하며, 국제협약의 발효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0.1퍼센트의 기준값은 이미 작성된 유해물질목록 및 자재신고서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필요는 없다.
- 1)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4 of the Convention, for all ships, new installation of materials which contain asbestos shall be prohibited. According to the UN recommendation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GHS)"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s Sub-Committee of Experts on the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UNSCGHS), the UN 'S Sub-Committee of Experts, in 2002 (published in 2003), carcinogenic mixtures classified as Category 1A (including asbestos mixtures) under the GHS are required to be labelled as carcinogenic if the ratio is more than 0.1%. However, if 1% is applied, this threshold value should be recorded in the Inventory and, if available, the Material Declaration and can be applied not later than five year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The threshold value of 0.1% need not be retroactively applied to those Inventories and Material Declarations.
- 2) 선체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건조 도료 기준으로 시부트린(cybutryne)의 평균 함유량은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mg)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When samples are directly taken from the hull, average values of cybutryne should not be present above 1,000 mg of cybutryne per kilogram of dry pa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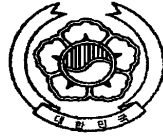
[공급자 적합선언서]

[FORM OF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물질신고서 관리를 위한 공급자 적합선언서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FOR MATERIAL DECLARATION MANAGEMENT		
1	식별 번호 Identification number	_____
2	발급자명 Issuer's name	_____
	발급자 주소 Issuer's address	_____
3	선언 대상 Object(s) of the declaration	_____ _____ _____
4	상기한 선언 대상은 다음 문서를 준수한다. The object(s) of the declaration described above is in conformity with the following documents :	
5	문서 번호 Document No.	제목 Title
		발행차수/발행일 Edition/date of issue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6	추가 정보 Additional information	
	다음을 위해 또는 다음을 대행하여 서명 Signed for and on behalf of	
	_____ _____	
	(발급 장소 및 날짜) (place and date of issue)	
7	_____ (이름, 직위) (name, function)	_____ (서명) (signature)

(제1쪽)

증서번호 제 _____ 호
Cert. No. _____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
INTERNATIONAL CERTIFICATE ON INVENTORY OF
HAZARDOUS MATERIALS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주의 : 이 증서는 유해물질목록 제1편이 첨부된다.)

(Note : This certificate shall be supplemented by Part I of the Inventory of Hazardous Materials)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 2009」(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_____ 이 발급한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Hong Kong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s, 2009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_____.

선박의 명세
Particulars of ship

선 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총 톤 수 Gross Tonnage	국제해사기구(IMO) 번호 IMO Number

선박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Name and address of shipowner : _____

국제해사기구(IMO)에 등록된 선박소유자 식별번호

IMO registered owner identification number : _____

국제해사기구(IMO) 회사 식별번호

IMO Company identification number : _____

건조일

Date of Construction : _____

1. 유해물질목록 제1편의 사항

1. Particulars of Part I of the Inventory of Hazardous Materials

유해물질목록 제1편의 식별/검증 번호

Part I of the Inventory of Hazardous Materials identification/verification number : _____

주의 : 국제협약 부속서 제5규칙에 따라 필요한 유해물질목록 제1편은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의 핵심 부분으로,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가 항상 첨부되어야 한다. 유해물질목록 제1편은 기구가 고안한 지침에 제공된 표준 양식에 기초하여 작성되도록 한다.

Note : Part I of the Inventory of Hazardous Materials, as required by regulation 5 of the Annex to the Convention, is an essential part of the International Certificate on Inventory of Hazardous Materials and must always accompany the International Certificate on Inventory of Hazardous Materials. Part I of the Inventory of Hazardous Materials should be compiled on the basis of the standard format shown in the guidelines developed by the Organization.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한다.
THIS IS TO CERTIFY.

1. 해당 선박은 국제협약의 부속서 제10규칙에 따라 검사를 받았음; 그리고,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0 of the Annex to the Convention; and
2. 해당 검사는 유해물질목록 제1편가 이 국제협약의 적용가능한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냄.
That the survey shows that Part I of the Inventory of Hazardous Materials fully complies with the applicabl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이 증서발급의 근거가 되는 검사 완료일(dd/mm/yyyy):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dd/mm/yyyy):

이 증서는 (dd/mm/yyyy) 까지 유효하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dd/mm/yyyy)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에서 발급한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직인

제11규칙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 유효기간 5년 미만인 증서의 연장을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FIVE YEARS
WHERE REGULATION 11.6 APPLIES*

이 선박은 국제협약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이 증서는 국제협약의 부속서 제11규칙제6항에 따라 _____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with 11.6 of the Annex to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dd/mm/yyyy): _____

정기검사가 완료되고 제11규칙제7항이 적용되는 경우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REGULATION 11.7 APPLIES*

이 선박은 국제협약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이 증서는 국제협약 부속서 제11규칙제7항에 따라 _____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This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1.7 of the Annex to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dd/mm/yyyy): _____

제11규칙제8항 또는 제11규칙제9항이 적용되는 경우 검사항에 도착 시까지 또는 유예기간 동안
증서의 유효성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REGULATION 11.8 OR 11.9 APPLIES*

이 증서는 국제협약 부속서 제11규칙제8항 또는 제11규칙 제9항**에 따라 _____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1.8. or 11.9** of the Annex to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dd/mm/yyyy): _____

* 검사 시 이 이서 페이지는 주관청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재이서되고 증서에 첨부된다.

* This page of the endorsement at survey shall be reproduced and added to the certificate as considered necessary by the Administration.

**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지울 것

** Delete as appropriate.

임시검사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DDITIONAL SURVEY*

국제협약의 부속서 제10규칙에 따른 임시검사 시, 이 선박은 국제협약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고 확인되었다.

At an additional surve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0 of the Annex to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dd/mm/yyyy): _____

* 검사 시 이 이서 페이지는 주관청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재이서되고 증서에 첨부된다

* This page of the endorsement at survey shall be reproduced and added to the certificate as considered necessary by the Administration.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수검요청일부터 14일 이내
------	------	------	----------------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팩스번호/전자우편

선박	선명	국제해사기구(IMO) 번호
	수검요청일	수검장소

증서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장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장 사유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선급법인의 장

첨부서류	1.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 있는 경우: 해당 선박의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 및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 2. 해당 선박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새로운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를 선박에 갖추어 둘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 3. 해당 선박이 출발항(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를 말한다)으로부터 최종 목적항까지의 거리 또는 출발항으로 회항하는 거리가 1,000해리 이내인 단거리 항해에 사용되는 경우: 선박의 운항계획서 및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	수수료 1,500원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증서 기재
--------	---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대행기관

210mm×297mm[백상지 80a/㎡(재활용품)]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수검요청일부터 14일 이내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팩스번호/전자우편

선박	선명	국제해사기구(IMO) 번호
	수검요청일	수검장소

증서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장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장 사유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국제선박 재활용준비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선급법인의 장

첨부서류	1. 선박의 운항계획서 2.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	수수료 1,500원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증서 기재
--------	---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대행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재활용 준비검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수검요청일부터 14일 이내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팩스번호/전자우편
선박	선명	국제해사기구(IMO) 번호
	총톤수	선박의 종류
	수검요청일	수검장소
비고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 선박에 대하여 재활용 준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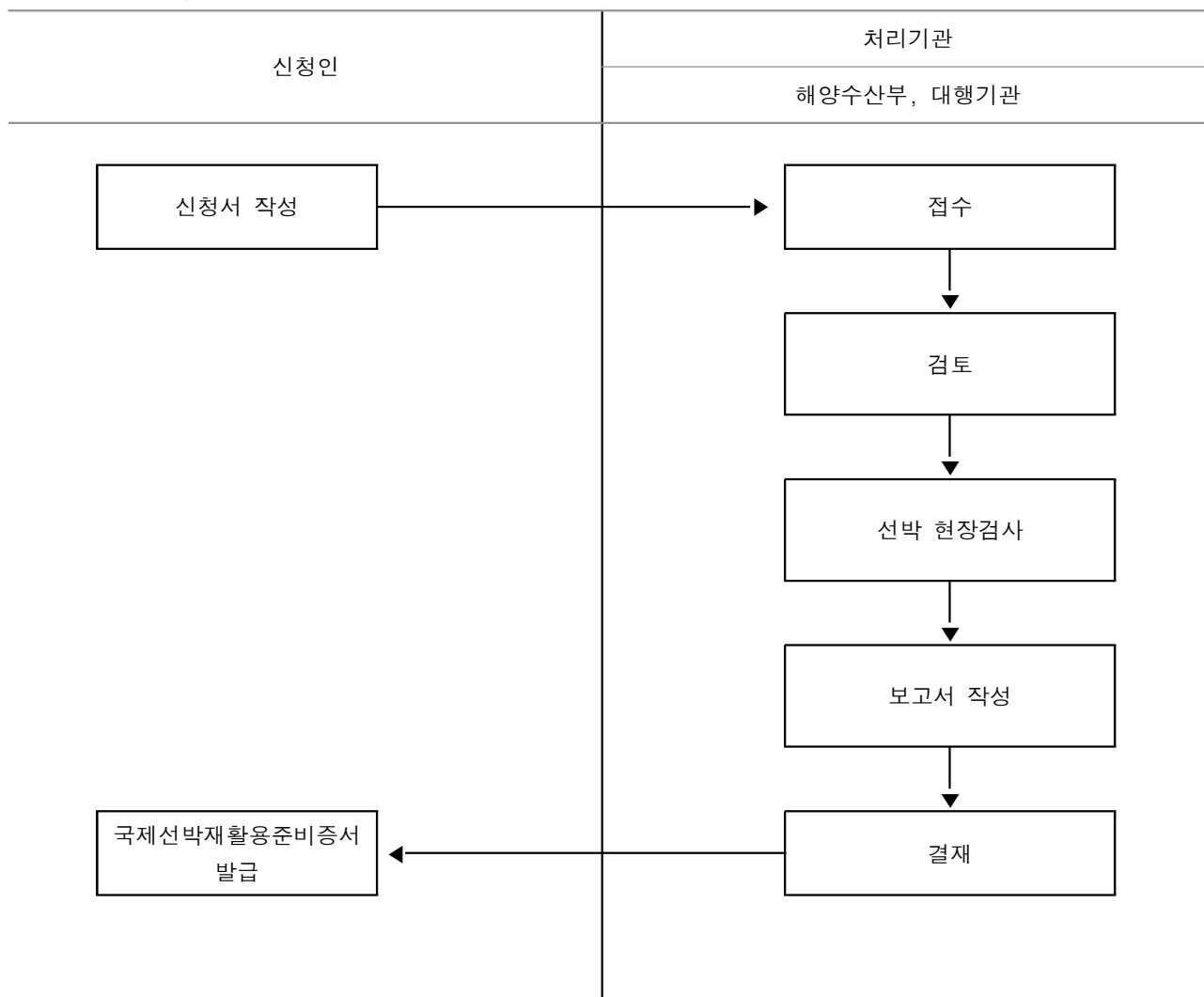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선급법인의 장

첨부서류	1.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 2. 검인받은 유해물질목록 제1편, 제2편 및 제3편 3. 별지 제4호서식의 물질신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공급자 적합선언서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 사본 또는 해당 선박재활용 시설이 국제협약에 따라 인증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외국정부(국제협약의 당사국에 한정한다)가 발급한 서류의 사본 5.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선박재활용 계획 또는 외국정부(국제협약의 당사국에 한정한다) 승인한 선박재활용 계획	수수료 별표 7에 따름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1쪽)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_____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 INTERNATIONAL READY FOR RECYCLING CERTIFICATE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주의 : 이 증서에는 유해물질목록과 선박재활용 계획이 첨부된다.)

(Note : This certificate shall be supplemented by the Inventory of Hazardous Materials
and the Ship Recycling Plan)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_____이 발급한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Hong Kong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s, 2009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_____.

선박의 명세

Particulars of ship

선 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총 톤 수 Gross Tonnage	국제해사기구(IMO) 번호 IMO Number

선박소유자 이름 및 주소

Name and address of shipowner : _____

IMO에 등록된 선박소유자 식별번호

IMO registered owner Identification number : _____

IMO 회사 식별번호

IMO Company Identification number : _____

건조일

Date of Construction : _____

선박재활용시설(들)의 세부사항

Particulars of the Ship Recycling Facility(ies)

선박재활용시설명

Name of Ship Recycling Facility : _____

선박재활용회사 고유식별번호*

Distinctive Recycling Company Identity number* : _____

주소

Full address : _____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DASR) 만료일

Date of expiry of DASR : _____

* 이 번호는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DASR)를 기준으로 한다.

* This number is based on the Document of Authorization to conduct Ship Recycling(DASR).

유해물질목록의 세부사항

Particulars of the Inventory of Hazardous Materials

유해물질목록 식별/검증 번호

Inventory of Hazardous Materials identification/verification number: _____

주의: 국제협약 부속서 제 5 규칙에 따라 필요한 유해물질목록은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의 핵심 부분이며, 항상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유해물질목록은 기구가 고안한 지침에 있는 표준 양식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Note: The Inventory of Hazardous Materials, as required by regulation 5 of the Annex to the Convention, is an essential part of the International Ready for Recycling Certificate and must always accompany the International Ready for Recycling Certificate. The Inventory of Hazardous Materials should be compiled on the basis of the standard format shown in the guidelines developed by the Organization.

선박재활용 계획의 세부사항

Particulars of the Ship Recycling Plan

선박재활용 계획 식별/검증 번호

Ship Recycling Plan identification/verification number: _____

주의: 국제협약 부속서 제 9 규칙에 따라 필요한 선박재활용 계획은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의 핵심 부분이며,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가 항상 첨부되어야 한다.

Note: The Ship Recycling Plan, as required by regulation 9 of the Annex to the Convention, is an essential part of the International Ready for Recycling Certificate and must always accompany the International Ready for Recycling Certificate.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한다.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은 국제협약의 부속서 제10규칙에 따라 검사를 받았음; 그리고,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0 of the Annex to the Convention; and

2. 이 선박은 국제협약의 부속서 제5에 따른 유효한 유해물질목록을 보유하고 있음;

That the ship has a valid Inventory of Hazardous Materials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5 of the Annex to the Convention;

3. 제9규칙에 따라 필요한 선박재활용 계획이, 제5규칙제4항에 따라 필요한 유해물질목록에 포함된 정보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으며, 진입안전 및 화기작업안전의 조성, 관리 및 감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그리고

That the Ship Recycling Plan, as required by regulation 9, properly reflects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Inventory of Hazardous Materials as required by regulation 5.4 and contains information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maintenance and monitoring of Safe-for-entry and Safe-for-hot work conditions; and

4. 이 선박이 재활용될 선박재활용시설(들)은 이 국제협약에 따라 유효한 인증을 받았음.

That the Ship Recycling Facility(ies) where this ship is to be recycled holds a valid author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이 증서는 (dd/mm/yyyy) 까지 유효하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dd/mm/yyyy).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에서 발급한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직인

제 14 규칙제 5 항이 적용되는 경우 유예기간 동안 선박재활용시설이 위치한 항구에 도착 시까지
증서의 유효성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THE SHIP RECYCLING FACILITY FOR A PERIOD OF GRACE WHERE REGULATION 14.5
APPLIES*

이 증서는 이 국제협약 부속서 제 14 규칙제 5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일 지점에서 지점까지 항해하는
동안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4.5 of the Annex to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for a single point to point voyage.

항구에서

From the port of : _____

항구까지

To the port of :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dd/mm/yyyy): _____

* 이 이서 페이지는 주관청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재이서되고 증서에 첨부된다.

* This page of the endorsement at survey shall be reproduced and added to the certificate as considered necessary by the Administration.

(1쪽)

증서번호 제 _____ 호
Cert. No. _____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에 따른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
**Document of Authorization to conduct Ship Recycling (DASR)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Hong Kong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s, 2009**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및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급한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Hong Kong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s, 2009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선박재활용시설명 Name of Ship Recycling Facility	
선박재활용회사 식별번호 Distinctive Recycling Company identity No.	
선박재활용시설 주소 Full address of Ship Recycling Facility	
주된 연락담당자 Primary contact person	
전화번호 Phone number	
전자우편 주소 E-mail address	
선박재활용 시설 소유 회사 이름, 주소 및 연락처 Name, address, and contact information of Ownership company	
사용 언어 Working language(s)	

이 인증서는 선박재활용시설이 국제협약 부속서의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관리 시스템, 절차 및 기술요건을 충족시켰음을 증명한다.

This is to verify that the Ship Recycling Facility has implemented management systems, procedures and techniques in accordance with Chapters 3 and 4 to the Annex to the Convention.

이 인증서는 _____까지 유효하며, 추록에 명시된 제한사항을 따라야 한다.

This authorization is valid until _____. and is subject to the limitations identified in the attached supplement

이 인증서는 국제협약 부속서 제16조에 따라 수정, 정지, 철회 또는 정기적인 갱신의 대상이다.

This authorization is subject to amendment, suspension, withdrawal, or periodic renewa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6 of the Annex to the Convention.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급한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직인

추 록 :**SUPPLEMENT to :**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에 따른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DASR)**

**Document of Authorization to undertake Ship Recycling (DASR) in
accordance with the Hong Kong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s, 2009**

주의 :

Notes :

1. 이 기록은 영구적으로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에 첨부된다.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는 선박재활용시설에서 항상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1. This record shall be permanently attached to the DASR. The DASR shall be available at the Ship Recycling Facility at all times.
2. 선박재활용시설에 의해 작성되고,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가 발행된 조건에 따라 필요한 모든 절차, 계획 및 그 밖의 문서는 선박재활용시설의 작업 언어로 그리고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하나로 이용가능해야 한다.
2. All procedures, plans and other documents produced by the Ship Recycling Facility and required under the terms to which the DASR has been issued shall be available in the working language of the Ship Recycling Facility and in either English, French or Spanish.
3. 이 인증서는 이 추록에 명시된 제한의 적용을 받는다.
3. The authorization is subject to the limitations defined by this supplement.

1. 일반 용어

1. GENERAL TERMS

1.1 국제협약 요건

1.1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선박재활용시설은, 다음의 관련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이 국제협약에 따른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설계, 건조 및 운영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The Ship Recycling Facility meets the requirements that it be designed, constructed, and operated in a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manner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including meeting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 제16규칙 -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
Regulation 16 - Authorization of Ship Recycling Facilities
- 제17규칙 - 일반 요건
Regulation 17 - General requirements
- 제18규칙 - 선박재활용시설 운영계획서
Regulation 18 - Ship Recycling Facility Plan
- 제19규칙 - 인간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 방지
Regulation 19 - Prevention of adverse effects to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 제20규칙 -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관리
Regulation 20 -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of Hazardous Materials
- 제21규칙 - 비상 대비와 대응
Regulation 21 -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 제22규칙 - 작업자 안전과 훈련
Regulation 22 - Worker safety and training
- 제23규칙 - 사고, 사건, 직업병 및 만성적 영향에 대한 보고
Regulation 23 - Reporting on incidents, accidents, occupational diseases and chronic effects
- 제24규칙 - 최초 통지와 보고 시 요구사항
Regulation 24 - Initial notification and reporting requirements
- 제25규칙 - 완료 후 보고
Regulation 25 - Reporting upon completion

이러한 요건들은 (허가, 면허, 인증, 법적 기준 또는 적용되는 그 밖의 체제 명시)을 통하여 선박재활용 시설에 부여된다.

These requirements are imposed on the Ship Recycling Facility by way of (Identify the permit, licence, authorization, legal standards, or other mechanism that applies)

선박재활용시설 운영계획서 식별/검증 번호 : _____
Ship Recycling Facility Plan identification/verification number

1.2 선박의 수용

1.2 Acceptance of ships

국제협약이 적용되는 선박과 국제협약 제3조제4항에 따라 유사하게 취급되는 선박에 대해, 선박재활용 시설은 국제협약 부속서 제17규칙에 따른 재활용 선박만을 수용할 수 있다.

For ship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and ships treated similarly pursuant to Article 3.4 of the Convention, the Ship Recycling Facility can only accept a ship for recycling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7 of the Annex to the Convention.

1.3 화기작업안전 및 진입안전 조건

1.3 Safe-for-hot work and Safe-for-entry conditions

선박재활용시설은 선박재활용 전 과정에서 화기작업안전 및 진입안전 조건을 수립, 관리 및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The Ship Recycling Facility is capable of establishing, maintaining and monitoring Safe-for-hot work and Safe-for-entry conditions throughout the Ship Recycling process.

1.4 유해물질 관리

1.4 Management of Hazardous Materials

선박재활용시설은 모든 유해물질의 관리가 국제협약과 모든 관련 지역 또는 국가의 규정/요건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 건조, 운영되어야 한다.

The Ship Recycling Facility is designed, constructed, operated, and required to ensure that all Hazardous Materials' management shall b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in compliance with the Convention and with all relevant local or national regulations/requirements.

1.5 선박재활용 작업의 지도와 위치

1.5 Map and location of Ship Recycling operations

선박재활용시설의 경계선 지도와 해당 시설 내의 선박재활용 작업 위치가 첨부된다.

A map of the boundary of the Ship Recycling Facility and the location of Ship Recycling operations within it, is attached.

2. 선박재활용시설의 처리능력

2. CAPABILITY OF SHIP RECYCLING FACILITY

2.1 선박의 크기

2.1 Size of ships

선박재활용시설은 다음의 크기 제한을 조건으로 재활용 선박을 수용할 권한을 위임받는다.

The Ship Recycling Facility is authorized to accept a ship for recycling subject to the following size limitations:

최대 크기 Maximum Size		그 밖의 제한 Other Limitations
길이(Length)		
폭(Breadth)		
경하중량 (Lightweight)		

2.2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관리

2.2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of Hazardous Materials

선박재활용시설은 아래에 언급된 조건에 따라 다음 표에서 명시된 유해물질을 포함하는 재활용 선박을 수용할 권한을 위임받는다:

The Ship Recycling Facility is authorized to accept a ship for recycling that contains Hazardous Materials as specified in the following table subject to the conditions noted below:

유해물질 Hazardous Material(*4)	유해물질 관리 Management of Hazardous Materials			권한위임 / 제한사항 Authorization/Limitations
	제거 Removal 예(Y)/아니오(N) (*2)	보관 Storage 예(Y)/아니오(N) (*2)	처리과정(*1) Process 예(Y)/아니오(N) (*3)	
석면 (Asbestos)				
오존층 파괴 물질 (Ozone-depleting substances)				
폴리염화비페닐(PCBs)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유해방오시스템 (Anti-fouling compounds and systems)				
카드뮴 및 카드뮴 화합물 (Cadmium and Cadmium Compounds)				
6가 크롬 및 6가 크롬 화합물 (Hexavalent Chromium and Hexavalent Chromium Compounds)				
납 및 납 화합물 (Lead and Lead Compounds)				
수은 및 수은 화합물 (Mercury and Mercury Compounds)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Polybrominated Biphenyl, PBBs)				
폴리브롬화벤조페논에테르 (PBDEs)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s)				
폴리염화나프탈렌 (염소 원자 3개 이상) (Polychlorinated Naphthalenes (more than 3 chlorine atoms))				
방사성 물질 (Radioactive substances)				
특정 단쇄 염화 파라핀 (알칸, C10-C13, 염소) (Certain 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Alkanes, C10-C13, chloro))				

유해한 액체, 찌꺼기 및 침전물 (Hazardous liquids, residues and sediments)				
가연성이 높고/높거나 독성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페인트 및 코팅제 (Paints and coatings that are highly flammable and/or lead to toxic release)				
위에서 열거되지 않고 선박의 구조물의 일부가 아닌 그 밖의 유해물질(상세표기) Other Hazardous Materials not listed above and that are not a part of the ship structure (specify)				

주의 : *1 처리과정은 선박재활용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유해물질의 처리과정을 의미한다:

Notes: *1 Process means the processing of Hazardous Materials in the Ship Recycling Facility, such as:

- a. 유해물질 소각;
a. incineration of Hazardous Materials;
- b. 유해물질의 매립; 그리고
b. reclamation of Hazardous Materials; and
- c. 기름잔류물 처리
c. treatment of oily residues.

*2 예(Y)인 경우, 증서번호 또는 그 밖의 관련 정보와 함께 선박재활용시설 운영계획서에서 제거할 권한을 받은 책임 있는 사람을 표시한다.

*2 If Yes (Y), indicate in the Ship Recycling Facility Plan the responsible personnel authorized to carry out the removal, with the certificate number or other relevant information.

*3 아니오(N)인 경우, 선박재활용시설 운영계획서에서 유해물질이 처리될/처분될 장소를 기술한다.

*3 If No (N), describe in the Ship Recycling Plan where the Hazardous Materials are to be processed/disposed.

*4 이러한 유해물질은 국제협약 부록 1과 2 그리고 제20규칙에 명시한다.

*4 These Hazardous Materials are specified in Appendices 1 and 2 and regulation 20 of the Convention.

선박재활용시설 중간·갱신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전화번호/전자우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또는 법인 소재지	
인증서 정보	보유중인 인증서 번호	보유중인 인증서 유효기간
	선박재활용시설 운영계획서 승인일	
비고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 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7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선박재활용시설의 중간인증[] · 갱신인증[]을 신청합니다.

이
한
지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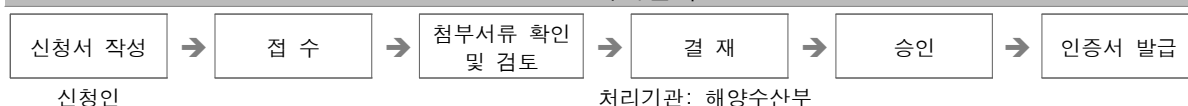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중간인증	1.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 2. 시설 및 운영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 3. 선박재활용시설 활동 요약보고서	수수료 별표 7에 따름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갱신인증	1. 선박재활용시설 운영계획서 2.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선박재활용 관련 사업허가·등록증 4. 선박재활용시설의 소유나 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소유권·임차권 등 권리관계 서류, 하청계약서 등 시설의 운영 및 사용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 5. 선박재활용시설의 배치도 6. 폐기물의 수거, 처리 및 운반 등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계약서류 7. 업체의 조직체계도 등 시설 운영조직 및 인력 구성에 관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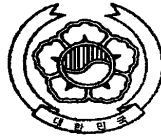
처리절차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210mm×297mm(백상지 80g/m²)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_____



선박재활용시설 중간인증심사 확인서

대 한 민 국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8항 및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급한다.

선박재활용시설명	
선박재활용회사 식별번호	
선박재활용시설 주소	
주된 연락담당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선박재활용 시설 소유 회사 이름,주소 및 연락처	
선박재활용시설 운영계획서 식별/검증 번호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8항에 따라 위 선박재활용 시설에 대해서 중간인증심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준에 적합하였음을 확인함.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에서 발급한다.

해 양 수 산 부 장 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 급 법 인 명

직인

선박재활용 계획 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성명)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 번호	선박재활용시설 운영계획서 등록/검증번호
재활용 선박 상세	선명	선박종류
	국제해사기구(IMO) 번호	선적항
	총톤수	건조일
	선박소유자 성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국제해사기구(IMO) 선박소유자 식별번호
	국제해사기구(IMO)의 회사 식별번호	예상 재활용 기간
비고 (변경 내용 등)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재활용 계획의 승인[],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승인	1. 선박재활용계획서 2. 해당 선박의 소유권 또는 처분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선박재활용계약서 사본 4.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 사본 및 선박재활용시설 운영계획서 5. 그밖에 선박 재활용 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3천원
	변경승인	1. 선박재활용 계획 승인서 2.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처 리 절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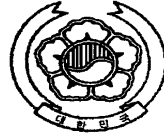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검 인	→	발 급
--------	---	-----	---	-----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 해양경찰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_____



선박재활용 계획 승인서 THE APPROVAL OF SHIP RECYCLING PLAN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및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급한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Hong Kong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s, 2009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재활용 선박의 명세

1.Particulars of Ship as accept for recycling

선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적항 Port of Registry	
총톤수 Gross Tonnage	
국제해사기구(IMO) 번호 IMO Number	
선박소유자의 이름 및 주소 Name and address of Shipowner	
IMO에 등록된 선박소유자 식별번호 IMO registered owner identification number	
IMO 회사 식별번호 IMO Company identification number	

2.선박재활용시설의 세부사항

2.Particulars of Ship Recycling Facility

선박재활용시설명 Name of Ship Recycling Facility	
선박재활용시설 사업자등록번호 Ship Recycling Facility Business Taxpayer ID No.	
선박재활용시설 주소 Full address of Ship Recycling Facility	
대표자 성명 (연락처) Name of representative(telephone NO.)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 번호 Cert. No. of the Document of Authorization to conduct Ship Recycling(DASR)	

(제2쪽)

이 승인서는 선박재활용 계획이 국제협약 부속서의 제9장 따른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한다.

This is to verify that the Ship Recycling Plan meets the requirement of chapter 9 of the Annex to the Convention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급한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해 양 경 찰 서 장
Korea Coast Guard Station

직인

선박재활용 통지서(선박소유자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선박명			
② 선박번호			
③ 국제해사기구(IMO) 번호			
④ 선적항			
⑤ 선박소유자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⑥ 선박소유자 주소			
⑦ 선박재활용시설 이름			
⑧ 선박재활용시설 주소			
⑨ 선박재활용 기간			
⑩ 선박재활용 사유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 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선박 재 활용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선박국적증서 사본, 선박재 활용 계획 사본	수수료
	없음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 활용품)]

선박재활용 통지서(선박재활용업자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선박명	
② 선박번호	
③ 선박종류	
④ IMO 선박식별번호	
⑤ 선박 국적 / 선적항	
⑥ 선박 국적 등록일	
⑦ 선체 번호 (Hull number on new-building delivery)	
⑧ 선박소유자의 이름 및 주소	
⑨ IMO 선박소유자 등록번호	
⑩ 선박회사의 이름과 주소 및 IMO 선박회사 등록번호	
⑪ 선박의 대행기관 명칭 (Name of all classification society)	
⑫ 선박의 주요 상세 (전장, 형폭, 형깊이, 경하중량, 총톤수 등)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박 재활용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해양경찰서장

첨부서류:	수수료
1. 승인받은 유해물질목록 제1편, 제2편, 제3편	
2. 승인받기 위한 선박재활용 계획서 사본(Draft ship recycling plan for approval)	없음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선박재활용 시작 계획보고서 REPORT OF PLANNED START OF SHIP RECYCLING

(선박재활용시설명)은/는
(선박재활용시설 주소)에 있다.

The(*Name of Ship Recycling Facility*)
located at(*Full Ship Recycling Facility address*)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 하에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인증서 발행 장소)에서 (발행 날짜)에 해양수산부에 의해 발행된 선박재활용시설인증서에 명시된 대로

Authoriz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Hong Kong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s, 2009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to conduct Ship Recycling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s indicated in the Document of Authorization to conduct Ship Recycling issued at (Place of authorization) b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n (Date of issue, dd/mm/yyyy)

선박재활용시설이 모든 면에서 (국제해사기구(IMO) 번호) 선박의 재활용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Hereby reports that the Ship Recycling Facility is ready in every respect to start the recycling of the vessel (IMO number).

(발행 날짜)에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 하에 그리고 국제협약의 조항 하에 (국제협약의 조항에 따라 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이나 조직의 명칭)에 의해 발행된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를 동봉합니다.

The International Ready for Recycling Certificate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Full designation of the person or organization authorized under the provisions of Convention) on (Date of issue, dd/mm/yyyy) is enclosed.

선박재활용시설 소유자/대표자 서명
(Signature of Ship Recycling Facility owner/operator)

선박재활용 완료보고서

STATEMENT OF COMPLETION OF SHIP RECYCLING

이 문서는 (등록 취소 시점에 재활용을 위해 수용된 선박의 이름)에 대한 선박재활용 완료 보고서입니다.
This document is a statement of completion of Ship Recycling for (Name of the ship when it was received for recycling/at the point of deregistration).

재활용을 위해 수용된 선박의 사항

Particulars of the Ship as received for recycling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적항 Port of registry	
총톤수 Gross tonnage	
국제해사기구(IMO) 번호 IMO number	
선박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Name and address of shipowner	
IMO에 등록된 선박소유자 식별번호 IMO registered owner identification number	
IMO 회사 식별번호 IMO company identification number	
건조일 Date of construction	

이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THIS CONFIRMS THAT:

(인증된 선박재활용시설의 이름과 장소) _____에서
이 선박은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선박재활용 계획에 따라 재활용되었고, 국제협약에 의해 요구된 대로 선박 재활용을 완료함:
(완료 날짜)

The ship has been recycled in accordance with the Ship Recycling Plan as part of the Hong Kong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s, 2009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at (Name and location of the authorized Ship Recycling Facility) and the recycling of the ship as required by the Convention was completed on: (Date of Completion, dd/mm/yyyy)

(선박재활용 완료 보고서의 발행 장소)에서

Issued at (Place of issue of the Statement of Completion)

(발행날짜)에 발행함

(Date of issue, dd/mm/yyyy)

(재활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대표자의 서명)

(Signature of the owner of the Ship Recycling Facility or a

representative acting on behalf of the owner)

representative acting on behalf of the owner)

선박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보고인	상호명(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선박기본정보	선명		선박종류	
	국제해사기구 번호		선박호출부호	
	선적항		총톤수	
명령이행 사항				
명령이행일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명령의 이행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명령이행 관련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앞쪽)

육안 · 표본 검사 계획 (Visual/sampling check plan)	
선박명 (Name of ship)	
국제해사기구(IMO) 번호 (IMO Number)	
총톤수 (Gross tonnage)	
선박의 길이 x 너비 x 깊이 (Length × Width × Depth)	
인도일 (Date of delivery)	
선박소유자 (Shipowner)	
선박소유자 연락처 (Contact point) (주소,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 (Address, Telephone, Fax, E-mail)	
검사 일정 (Check schedule)	
검사 장소 (Site of check)	
검사 담당 (In charge of check)	
검사 엔지니어 (Check engineer)	
샘플링 엔지니어 (Sampling engineer)	
석면 샘플링 방법 및 비산 방지 조치 (Sampling method and anti-scattering measure for asbestos)	
페인트 조각 샘플링 (Sampling of fragments of paints)	
실험실 (Laboratory)	
화학 분석 방법 (Chemical analysis method)	
육안 · 표본 검사 위치 (Location of visual/sampling check)	

(뒤쪽)

육안 검사를 위한 장비, 시스템 및 구역 목록 (List for equipment, system and/or area for visual check)

유해물질 포함 가능 항목(PCHM)으로 분류된 장비, 시스템 및 구역 목록 (List of equipment, system and/or area classed as PCHM)				
위치 (Location)	장비, 기계 및 구역 (Equipment, machinery and/or zone)	부품명 (Name of Parts)	물질 (Materials)	문서 확인 결과 (Result of document checking)

표본 검사를 위한 장비, 시스템 및 구역 목록 (List of equipment, system and/or area for sampling check)				
위치 (Location)	장비, 기계 및 구역 (Equipment, machinery and/or zone)	부품명 (Name of Parts)	물질 (Materials)	문서 확인 결과 (Result of document checking)

이 계획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유해물질목록 개발 지침에 따라 수립되었음.

This plan i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ventory of Hazardous Materials.

문서 확인 일시 및 장소 (Document check date/place) : _____

계획 작성일 (Preparation date of plan) : _____